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4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인영의원안)	2

I. 개요

1.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4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30.
-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인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4항 신설)</u> ○ 세액공제 요건: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미적용 ○ 세액공제액: 조정금액의 3%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인영의원안 2024. 10. 30. 발의(의안번호 5045)

□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16조1)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납품대금조정금액의 3%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2)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수위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

타거래³⁾에서 수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동 제도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협상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

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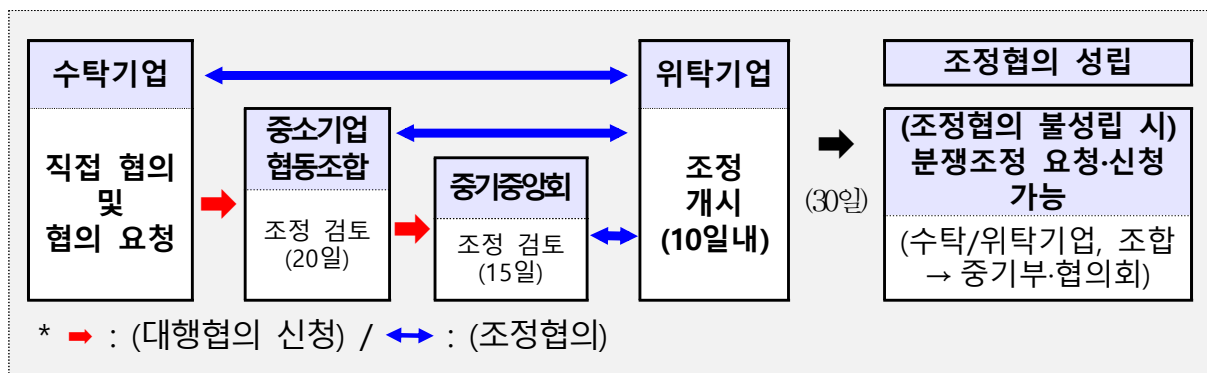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함.

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납품대금 조정협의 절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개정안은 위탁기업인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자물가 총지수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111.6
소비자물가상승률(%)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주) 소비자물가 총지수(2020=100)

자료: 통계청

이러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이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손실이 커질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따라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납품대금 지급액이 늘어나 생기는 위탁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음. 이는 해당 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할 금전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경영여건·추후 경기에 대한 전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의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자발적인 조정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 조정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결과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유인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154

-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8조제4항).